# [대치 푸르지오 써밋]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합니다.
(http://www.prugiosummit.com/house/2020/daechisummit)

- 본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 후 사전서류접수 기간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102A타입만 건립됩니다.)
- 당사가 고지한 해당 날짜 및 운영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및 공급 계약체결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오픈 및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분양 상담전화(☎1800-4687)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에 적용지역내 주택으로서,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별도의 허가절차를 득해야 하거나, 계약체결 및 소유권 행사 (의무거주기간, 처분제한 등)에 제약이 있을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30.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강남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하 (무주택 및 1주택 소유자)세대주만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 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3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6호) | 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 7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 |
|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 5년간 | | |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 5년 |
| | | 85초과 | 3년 |
| | 그 외 | 85이하 | 3년 |
| | | 85초과 | 1년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 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0조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 강남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0.) 현재 서울시(주민등록등본 기준)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 2년 이상 (2018.07.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18.07.30.이전부터 계속 거주)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므로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 3,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 포함)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 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 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1. 분양권 등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으로 보지 아니함.
  가. 시행일('18.12.11.)이전 공급계약된 건 나.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다. 시행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라. 시행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 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공급계약-준공 후-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 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엑셀 검색 결과 상 동일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2. 분양권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 구분 란에서 "전매-준공 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가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 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 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 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 · 당첨 · 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서울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출입국사실 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단,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하여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계속 국외에 거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는 물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하신 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별 청약예치금을 충족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주택형 전용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용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합니다. (2순위로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방식,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무주택자 선정 이후 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첨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됨)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 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에 의거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1항 및 제26조2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됩니다.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제34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2019.12.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분양 주택에 당첨된 후 부적격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위 공급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정하는 해당 분양 주택의 임의 공급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공급하는 것은 주택법령 위반에 해당됨.

■ 2018.05.04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특별공급 개편으로 인해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하며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에 주택으로써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 은 부적격 처리합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등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의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되오니,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로 청약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 규칙 제2조 제 7호의 각목

- 지역(직장포함) 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 된 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즉, 지역(직장)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입주대상자는 각각 사업계획 승인일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 규칙 제2조 제7호의 각목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지역(직장포함) 주택조합의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및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재개발/재건축) 및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인가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본 아파트의 당첨 또는 계약체결로 인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조합원 분양신청 불가/현금청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계획승인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
-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2호,4호,6호,7호 가목, 제8호)의 주택, 제47조 이전 기관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단,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 제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 경과조치 대상은 제외.
- 투기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
  - 재당첨 제한기간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10년 / 청약과열지역 7년이 적용되며 당첨된 주택에 대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조회 등) 조회 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에서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중 분리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 당첨제한기간 :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 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9월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 발표일이 2017년 10월 18일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부터 적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 분양권 전매, 재당첨 제한 안내

①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특별공급 당첨 된 계약세대의 경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③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 1순위, 2순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 2항에 의거 계약취소주택(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해지된 주택)이 19세대 또는 19호 이상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일 것
2.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 계약취소주택(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해지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 4항에 따라 계약취소주택의 40%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 2항에 따라 선정 합니다

■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사업주체들과 협의하여 관할지역에 있는 계약취소주택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통합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3 2항에 따라 한꺼번에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취소주택이 19세대 또는 19호 미만인 주택단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해 무주택기관 및 주택소유여부 등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주택의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 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2019.08.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 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지역 및 유형에 상관없이 10년 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처벌을 받음)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rugiosummit.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시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국토교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모바일서비스가 2018년 5월 28일부터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8년 5월 4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청약 신청방법 및 장소, 당첨자 발표일, 지정계약기간 안내

| 구 분 | 1순위 해당<br>(서울 2년 이상 거주) | 1순위 기타<br>(서울 2년 미만/경기/인천) | 일반 2순위<br>(서울/경기/인천) | 당첨자발표 | 서류제출 | 계약체결 |
|---|---|---|---|---|---|---|
| 일 정 | 08월 10일(월요일) | 08월 11일(화요일) | 08월 12일(수요일) | 08월 20일(목요일) | 08월 24일(월요일)<br>~ 08월 28일(금요일) | 08월 31일(월요일)<br>~ 09월 02일(수요일) |
| 방 법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개별조회<br>(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방문접수(10:00~17:00)<br>※ 방문사전예약 필수 | 방문접수(09:00~18:00)<br>※ 방문사전예약 필수 |
| 장 소 | • 한국감정원<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청약홈" 검색) | | | • 한국감정원<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청약홈" 검색) | ■ 당사 견본주택<br>(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337 써밋갤러리)<br>※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 11963호(2020.07.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원 (대치동 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18층, 9개동, 총 489세대(조합원분 349세대, 임대주택 20세대, 보류지 14세대 포함) 중 일반공급 10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br>(전용면적기준) | 타입<br>(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 기타 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br>(㎡) | 세대별대지지분<br>(㎡) | 공급세대수<br>(일반분양) | 최하층<br>우선배정<br>세대수 |
|---|---|---|---|---|---|---|---|---|---|---|---|---|
| | | | |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소계 | | | | | |
| 민영 주택 | 2020000749 | 01 | 051.7377A | 51A | 51.7377 | 18.5038 | 70.2415 | 49.7581 | 119.9995 | 28.8300 | 33 | 4 |
| | 2020000749 | 02 | 053.3317A | 53A | 53.3317 | 19.2922 | 72.6239 | 51.2911 | 123.9150 | 29.8200 | 10 | 2 |
| | 2020000749 | 03 | 059.9845A | 59A | 59.9845 | 17.6730 | 77.6575 | 57.6893 | 135.3469 | 31.8800 | 20 | 1 |
| | 2020000749 | 04 | 059.9885B | 59B | 59.9885 | 18.0325 | 78.0210 | 57.6932 | 135.7142 | 32.0300 | 3 | - |
| | 2020000749 | 05 | 101.6961A | 101A | 101.6961 | 28.4549 | 130.1510 | 97.8050 | 227.9559 | 53.4300 | 1 | - |
| | 2020000749 | 06 | 102.3261A | 102A | 102.3261 | 28.5450 | 130.8711 | 98.4108 | 229.2819 | 53.7200 | 30 | - |
| | 2020000749 | 07 | 107.9139A | 107A | 107.9139 | 31.7584 | 139.6723 | 103.7848 | 243.4572 | 57.3300 | 1 | - |
| | 2020000749 | 08 | 117.6566A | 117A | 117.6566 | 31.3432 | 148.9998 | 113.1548 | 262.1545 | 61.1600 | 5 | - |
| | 2020000749 | 09 | 129.5230A | 129A | 129.5230 | 39.0972 | 168.6202 | 124.5671 | 293.1873 | 69.2200 | 1 | - |
| | 2020000749 | 10 | 150.2717A | 150A | 150.2717 | 42.5562 | 192.8279 | 144.5219 | 337.3498 | 79.1500 | 1 | - |
| | 2020000749 | 11 | 155.1644A | 155A | 155.1644 | 43.7747 | 198.9391 | 149.2274 | 348.1665 | 81.6600 | 1 | - |
| | 합계 | | | | | | | | | | 106 | 7 |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방식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7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106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천원)

| 타입 | 공급세대 | 동별/라인별 | 층구분 | 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20%) | | 중도금(60%) | | | | | | 잔금(20%)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지정일 |
| | | | | | | | | | 계약시 (10%) | 계약후 30일내 (10%) | (20.11.20) | (21.04.20) | (21.09.20) | (22.02.20) | (22.07.20) | (22.12.20) | |
| 51A | 33 | 104동(1,2,4호) 109동(1,2,4호) | 1층 | 4 | 686,599 | 295,801 | - | 982,400 | 98,240 | 98,240 | 98,240 | 98,240 | 98,240 | 98,240 | 98,240 | 98,240 | 196,480 |
| | | | 2층 | 4 | 692,330 | 298,270 | - | 990,600 | 99,060 | 99,060 | 99,060 | 99,060 | 99,060 | 99,060 | 99,060 | 99,060 | 198,120 |
| | | | 3층 | 5 | 699,179 | 301,221 | - | 1,000,400 | 100,040 | 100,040 | 100,040 | 100,040 | 100,040 | 100,040 | 100,040 | 100,040 | 200,080 |
| | | | 4층 | 5 | 706,378 | 304,322 | - | 1,010,700 | 101,070 | 101,070 | 101,070 | 101,070 | 101,070 | 101,070 | 101,070 | 101,070 | 202,140 |
| | | | 5층 | 4 | 713,646 | 307,454 | - | 1,021,100 | 102,110 | 102,110 | 102,110 | 102,110 | 102,110 | 102,110 | 102,110 | 102,110 | 204,220 |
| | | | 6~10층 | 11 | 720,635 | 310,465 | - | 1,031,100 | 103,110 | 103,110 | 103,110 | 103,110 | 103,110 | 103,110 | 103,110 | 103,110 | 206,220 |
| 53A | 10 | 104동(3호) 109동(3호) | 1층 | 2 | 709,872 | 305,828 | - | 1,015,700 | 101,570 | 101,570 | 101,570 | 101,570 | 101,570 | 101,570 | 101,570 | 101,570 | 203,140 |
| | | | 2층 | 2 | 715,883 | 308,417 | - | 1,024,300 | 102,430 | 102,430 | 102,430 | 102,430 | 102,430 | 102,430 | 102,430 | 102,430 | 204,860 |
| | | | 3층 | 2 | 722,872 | 311,428 | - | 1,034,300 | 103,430 | 103,430 | 103,430 | 103,430 | 103,430 | 103,430 | 103,430 | 103,430 | 206,860 |
| | | | 4층 | 2 | 730,350 | 314,650 | - | 1,045,000 | 104,500 | 104,500 | 104,500 | 104,500 | 104,500 | 104,500 | 104,500 | 104,500 | 209,000 |
| | | | 5층 | 1 | 737,828 | 317,872 | - | 1,055,700 | 105,570 | 105,570 | 105,570 | 105,570 | 105,570 | 105,570 | 105,570 | 105,570 | 211,140 |
| | | | 6~10층 | 1 | 744,608 | 320,792 | - | 1,065,400 | 106,540 | 106,540 | 106,540 | 106,540 | 106,540 | 106,540 | 106,540 | 106,540 | 213,080 |
| 59A | 20 | 101동(4,5호) 102동(1,3,4호) 107동(1,2호) | 1층 | 1 | 778,364 | 335,336 | - | 1,113,700 | 111,370 | 111,370 | 111,370 | 111,370 | 111,370 | 111,370 | 111,370 | 111,370 | 222,740 |
| | | | 2층 | 6 | 784,864 | 338,136 | - | 1,123,000 | 112,300 | 112,300 | 112,300 | 112,300 | 112,300 | 112,300 | 112,300 | 112,300 | 224,600 |
| | | | 3층 | 7 | 792,622 | 341,478 | - | 1,134,100 | 113,410 | 113,410 | 113,410 | 113,410 | 113,410 | 113,410 | 113,410 | 113,410 | 226,820 |
| | | | 4층 | 6 | 800,799 | 345,001 | - | 1,145,800 | 114,580 | 114,580 | 114,580 | 114,580 | 114,580 | 114,580 | 114,580 | 114,580 | 229,160 |
| 59B | 3 | 102동(2호) | 2층 | 1 | 780,741 | 336,359 | - | 1,117,100 | 111,710 | 111,710 | 111,710 | 111,710 | 111,710 | 111,710 | 111,710 | 111,710 | 223,420 |
| | | | 3층 | 1 | 788,429 | 339,671 | - | 1,128,100 | 112,810 | 112,810 | 112,810 | 112,810 | 112,810 | 112,810 | 112,810 | 112,810 | 225,620 |
| | | | 4층 | 1 | 796,606 | 343,194 | - | 1,139,800 | 113,980 | 113,980 | 113,980 | 113,980 | 113,980 | 113,980 | 113,980 | 113,980 | 227,960 |
| 101A | 1 | 108동(3호) | 17층 | 1 | 1,405,278 | 550,384 | 55,038 | 2,010,700 | 201,070 | 201,070 | 201,070 | 201,070 | 201,070 | 201,070 | 201,070 | 201,070 | 402,140 |
| 102A | 30 | 105동(3호) 106동(3호) 108동(3호) | 2층 | 3 | 1,253,197 | 490,821 | 49,082 | 1,793,100 | 179,310 | 179,310 | 179,310 | 179,310 | 179,310 | 179,310 | 179,310 | 179,310 | 358,620 |
| | | | 3층 | 3 | 1,265,498 | 495,639 | 49,563 | 1,810,700 | 181,070 | 181,070 | 181,070 | 181,070 | 181,070 | 181,070 | 181,070 | 181,070 | 362,140 |
| | | | 4층 | 3 | 1,278,567 | 500,758 | 50,075 | 1,829,400 | 182,940 | 182,940 | 182,940 | 182,940 | 182,940 | 182,940 | 182,940 | 182,940 | 365,880 |
| | | | 5층 | 3 | 1,291,706 | 505,904 | 50,590 | 1,848,200 | 184,820 | 184,820 | 184,820 | 184,820 | 184,820 | 184,820 | 184,820 | 184,820 | 369,640 |
| | | | 6~10층 | 15 | 1,304,776 | 511,022 | 51,102 | 1,866,900 | 186,690 | 186,690 | 186,690 | 186,690 | 186,690 | 186,690 | 186,690 | 186,690 | 373,380 |
| | | | 11층이상 | 3 | 1,317,915 | 516,169 | 51,616 | 1,885,700 | 188,570 | 188,570 | 188,570 | 188,570 | 188,570 | 188,570 | 188,570 | 188,570 | 377,140 |
| 107A | 1 | 102동(1호) | 16층 | 1 | 1,508,086 | 590,650 | 59,064 | 2,157,800 | 215,780 | 215,780 | 215,780 | 215,780 | 215,780 | 215,780 | 215,780 | 215,780 | 431,560 |
| 117A | 5 | 105동(5호) 106동(5호) 108동(5호) | 2층 | 3 | 1,445,115 | 565,987 | 56,598 | 2,067,700 | 206,770 | 206,770 | 206,770 | 206,770 | 206,770 | 206,770 | 206,770 | 206,770 | 413,540 |
| | | | 3층 | 2 | 1,459,093 | 571,461 | 57,146 | 2,087,700 | 208,770 | 208,770 | 208,770 | 208,770 | 208,770 | 208,770 | 208,770 | 208,770 | 417,540 |
| 129A | 1 | 105동(4호) | 17층 | 1 | 1,822,241 | 713,690 | 71,369 | 2,607,300 | 260,730 | 260,730 | 260,730 | 260,730 | 260,730 | 260,730 | 260,730 | 260,730 | 521,460 |
| 150A | 1 | 106동(3호) | 16층 | 1 | 2,083,840 | 816,146 | 81,614 | 2,981,600 | 298,160 | 298,160 | 298,160 | 298,160 | 298,160 | 298,160 | 298,160 | 298,160 | 596,320 |
| 155A | 1 | 106동(4호) | 17층 | 1 | 2,149,886 | 842,013 | 84,201 | 3,076,100 | 307,610 | 307,610 | 307,610 | 307,610 | 307,610 | 307,610 | 307,610 | 307,610 | 615,220 |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 금액은 전용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전용 85㎡ 초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본 아파트는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의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무상제공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주방가전 등]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의거)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 전기실 등이 기타공용면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공원, 도로 등 각종 기부채납시설면적은 계약면적에 미포함 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별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별 라인별 최하층 및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등의 기타시설은 경관심의 재심의 등을 통해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납부하여야함.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납부 일자를 별도 변경하지 아니하며 금융기관 미영업으로 인한 익일 납부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중도금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시 「외국인토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신고를 하여야함.

##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신청<br>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연속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br>(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br>(본 주택의 해당순위 1순위 24개월)입주자 저축 요건 및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2년 이상)에 거주 요건 충족 시 당해 1순위 청약 가능)<br>※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
| 청약신청<br>유의사항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br>■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 제3조제2항 각호 (3호, 5호, 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 주택의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의 청약이 제한 됨.<br>■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당해),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받지 않음)<br>■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 됨. (2순위로만 청약 가능)<br>■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 됨.<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br>(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 | |
|---|---|
| |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br>■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br>■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br>■ 중복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포함)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세대 1건만 신청가능),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br>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br>■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br>⑴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청약저축 변경<br>(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br>⑵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지역간 전입 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 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당해)에서 600% 초과 청약접수 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아니함.<br>: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함)<br>: 세대주 변경(모집공고 당일까지 변경 시 1순위 청약 신청 가능함)<br>⑶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 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 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br>■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br>■ 재당첨 제한(2순위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br>■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br>■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br>■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당해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 후 당첨되는 경우 공급받을 수 있음) |

■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구분 | 순위 | 신청구분 | 신청자격 | 거주구분 |
|---|---|---|---|---|
| 민영주택 | 1순위 | 85㎡ 이하 |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100%가점제) (85㎡ 이하 주택의 경우 무주택(가점제) 대상자에게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100%를 우선 배정하며, 1주택소유(추첨제) 대상자도 청약 신청은 가능하나, 무주택(가점제) 신청자 수가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초과 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br>⑴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br>⑵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br>※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는 인정되나 부양 가족 수에서는 제외됨(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br>■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br>⑴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br>⑵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⑶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br>⑷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지역별, 면적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 | | 85㎡ 초과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50% / 추첨제 50%)<br>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br>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br>※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 수에는 제외됨<br>※ "1분양권 등" 소유 시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서약)불가<br>※ 가점제(50%) / 추첨제(50%)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br>※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

| | | | | |
|---|---|---|---|---|
| | | |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br>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br>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br>•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br>-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br>-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br>-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 | 1순위<br>청약제한 대상 |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불가함 (2순위로 청약가능)<br>⑴ 세대주가 아닌 자<br>⑵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br>⑶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br>(4)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 |
| | 2순위 | 전주택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
| | | 2순위<br>청약제한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별표2]

| 구 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구분 | 내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br>⑵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br>⑶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②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⑴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청약자 본인은 제외하여 산정)<br>가) 청약자의 배우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여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br>나)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 직계존속<br>다)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br>⑵ 청약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

| | |
|---|---|
| | 배우자 포함)가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br>⑶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br>⑷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직계존속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한다.<br>⑸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br>-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 ③입주자저축가입기간 | 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br>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이상 ~ 9년미만 | 18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br>■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br>■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br>※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1년 미만 | 2 | 9년이상 ~ 10년미만 | 20 | |
| | | 1년이상 ~ 2년미만 | 4 | 10년이상 ~ 11년미만 | 22 | |
| | | 2년이상 ~ 3년미만 | 6 | 11년이상 ~ 12년미만 | 24 | |
| | | 3년이상 ~ 4년미만 | 8 | 12년이상 ~ 13년미만 | 26 | |
| | | 4년이상 ~ 5년미만 | 10 | 13년이상 ~ 14년미만 | 28 | |
| | | 5년이상 ~ 6년미만 | 12 | 14년이상 ~ 15년미만 | 30 | |
| | | 6년이상 ~ 7년미만 | 14 | 15년이상 | 32 | |
| | | 7년이상 ~ 8년미만 | 16 | -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 등·초본<br>■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br>■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br>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br>■ 직계존속 부양가족 인정 신청시 : 직계존속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 자동계산에 의거 별도 확인 필요없음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 |
| 총점 | 84 | | | | | |
| 비고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br>※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 | | | |

■ 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구분 | 내용 |
|---|---|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 ■ 층, 동, 호 구분 없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 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br>■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br>■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단, 만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br>■ 가점제 당첨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호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br>-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br>-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br>*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 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br>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br>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br>3) 1) 및 2)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br>•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2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시 2년 미만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br>•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 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br>•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br>(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br>■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의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 됨)<br>■ 예비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br>■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 됨.<br>■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공개함. |
| 유의사항 | ■ 일반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당첨자로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br>■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자는 무효 처리됩니다.<br>■ 예비입주자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그 기간 이내에 공급유형별 최초 예비입주자 공급(추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그 기간이 경과하여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처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 (예시)

①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③ 분양주택(LH, 지방공사 등)으로서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④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⑤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⑥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정당당첨자가 정당계약을 하거나,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잔여세대를 추가 계약한 경우
⑧「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주택유형(타입)을 계약한 경우

## Ⅲ 청약신청일정 및 구비서류

■ 청약 전 반드시 과거 당첨사실 조회 요망
-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 확인 조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일반공급 청약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구분 | 신청대상자 | 거주구분 | 신청접수일 | 신청방법 |
|---|---|---|---|---|
| 일반공급 | 1순위 (해당)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 2020년 08월 10일(월요일) 08:00~17:30 | ■ 인터넷 청약신청(PC 또는 스마트폰)<br>■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br>- 모바일 한국감정원 청약홈 모바일 앱("청약홈"검색)<br>※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 |
| | 1순위 (기타)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2020년 08월 11일(화요일) 08:00~17:30 | |
| | 2순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2020년 08월 12일(수요일) 08:00~17:30 | |

※ 1순위 청약일정 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⑴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 불가 (위반 시 부적격 처리)
⑵ 서울특별시 2년 미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해당지역" 접수일에는 청약 불가 (위반 시 부적격 처리)

※ 1순위 청약 시 유의 사항
⑴ "해당지역(서울시)"2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해당지역(서울시)"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불가(위반 시 부적격 처리)
⑵ "해당지역(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해당지역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서울시) 1순위에서 청약마감 시 더 이상 접수 하지 않음

※ 1순위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1순위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해당지역 청약 접수자는 청약 전 반드시 서울시 전입일 확인 요망(2018.07.30일 이전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 확인 요망)

※ 1순위(당해)지역 청약마감 시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일반공급 |
|---|
|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br>[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br>① [행정서류자동발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br>· 「APT청약신청」⇒「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자동서류발급」⇒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br>② [청약자격사전관리] 공고일부터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일 1영업일 전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 |

(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함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수 있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 구비사항 |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br>·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br>· 본인확인증표(신분증)<br>※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br><br>(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br>-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br>※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하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람.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배정 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최대 1년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 구분 |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
|---|---|
| 신청자격 | •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자 중 최하층 주택 희망자<br>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 65세 이상인자<br>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br>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br>※ 경쟁 시 ①,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
| 신청방법 |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일반공급) 신청일자에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br>•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 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br>※ 자격입증서류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Ⅳ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
| 일반공급 | 1순위 | • 일시: 2020.08.20.(목요일)<br>• 확인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br>또는 청약홈 앱에서 개별조회<br>(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 일시<br>- 2020.08.31.(월)~ 2020.09.02.(수) (10:00~16:00)<br>• 장소<br>- 대치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br>(장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7 써밋 갤러리 3층)<br>※ 향후 계약장소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
| | 2순위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0.08.20(목) ~ 2020.08.29(토) (10일간) |
| 인터넷 | | - 한국 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br>-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0.08.20.(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Ⅴ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주,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우선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은 추후 별도 고지 예정으로 , 고지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우선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
- 서류미제출로 자격확인이 안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임
-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됨(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에 및 제52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포기로 간주 하여 당첨자로 분류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 제출방법 | 시간예약 | 서류제출 장소 |
|---|---|---|---|---|
| 당첨자 서류 제출 | 2020. 08. 24. (월요일) ~ 2020. 08. 28. (금요일) 5일간, 10:00 ~ 17:00 | 방문 접수 | 당사 사전예약 홈페이지 활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대치동) 써밋갤러리 3층 대치 푸르지오 써밋 |
|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해당) | | | |
| 공통서류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br>·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 | ○ |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용 불가)<br>· 인감증명서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br>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br>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 ·국내거주기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br>※기록대조일 : 2017.07.30.~ 현재로 설정 |
| 추가서류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br>존·비속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체 포함"으로 발급<br>·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속 |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상세"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 | | ○ | 복무확인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br>(인터넷 접수시 해당없음)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br>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br>·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br>존·비속 |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기록대조일 : 직계존속은 2017.07.30.~ 현재로 설정 / 직계비속은 2019.07.30.~현재로 설정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br>직계비속 | ·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br>·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 부적격당첨<br>통보를 받은자 | ○ | | 무주택 소명서류 | 해당 주택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br>·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br>·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br>·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제3자 대리인<br>신청시<br>추가사항 | ○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 | ○ | | 위임장 | -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Ⅵ 계약체결 안내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당첨 동호수별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당첨자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기간내 미계약시 계약포기로 간주함.

| 구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안내 | 2020. 08. 31. (월요일) ~ 2020. 09. 02. (수요일) 3일간, 10:00 ~ 16: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대치동) 써밋갤러리 3층 대치 푸르지오 써밋 |
| 비고 | 당사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사전에 일정을 신청하시기 바람. / 일자별 선택고객이 집중될 경우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임의 변경 및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
| 1차 계약금 | 국민은행 | 486801-01-430825 | 대치3동제1지구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 계약체결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 부여(가상계좌) | |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부터는 계약 체결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2차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집공고상의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입금됨. 개인별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02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아래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0세대 미만의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하며, 20세대 이상의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재공고 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함.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된 호수에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⑴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⑵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⑶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⑷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혹은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 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명칭,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됨.
■ 서울시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함.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 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전체 분양세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규제(분양가 9억원 초과)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대출은 불가하며, 이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계약자의 중도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조달불가로 인한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당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해당자) | | | |
| 공통서류 | O | | 자격검증서류 |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한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O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O |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
| | O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 O |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구비서류 | | O | 인감증명서 | 본인 |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 | | O | 위임장 |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O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본인 외 모두(배우자 포함) 제3자로 간주 / 대리인계약은 가족에 한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 O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 시 |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 | | O | 무허가건물확인서 | 해당 시 |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 | |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시 |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 | |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시 |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 | | 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시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금융결제원 발급) |
| 비고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br>■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거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br>■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 (대리 접수 불가).<br>※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Ⅷ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유상)

①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 구 분 | 51A | 53A | 59A | 59B | 101A | 102A | 107A | 117A | 129A | 150A | 155A |
|---|---|---|---|---|---|---|---|---|---|---|---|
| 발코니확장금액 | 14,900,000 | 15,800,000 | 18,900,000 | 18,600,000 | 25,500,000 | 22,400,000 | 34,800,000 | 31,100,000 | 31,400,000 | 31,800,000 | 42,000,000 |

② 발코니 확장 시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시공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이 가능한 기한 이후에는 계약 체결 및 선택사항 변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 및 형태와 재질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수전 및 드레인,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또한,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따라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개폐방식,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므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확장형세대와는 공간 및 내부 인테리어가 상이하며, 일부 침실 및 발코니가 협소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상의 기본형 평면을 참고하여,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 돌출, 실사용면적의 감소,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인·허가 변경 후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확장 형태에 따라 선반의 설치유무, 수량, 크기 등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설치되는 가구량에 따라 확장금액에 반영됨.
- 발코니 확장범위는 세대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가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바람.
-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할 경우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 주체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및 변경을 개별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세대는 비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는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옵션 품목 (유상)

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 주택형 | 옵션선택 | 실내기 | 에어컨 설치 위치 | 금액 | | 제조자 | 비고 |
|---|---|---|---|---|---|---|---|
| | | | | 일반형 | 공기청정형 | | |
| 51A | 선택1 | 2대 | 거실/주방 + 침실1 | 3,600,000 | 4,300,000 | LG전자 | |
| | 선택2 | 3대 |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5,200,000 | 6,100,000 | " | |
| 53A | 선택1 | 2대 | 거실/주방 + 침실1 | 3,600,000 | 4,300,000 | " | |
| | 선택2 | 3대 |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5,200,000 | 6,100,000 | " | |
| 59A | 선택1 | 2대 | 거실/주방 + 침실1 | 3,600,000 | 4,300,000 | " | |
| | 선택2 | 4대 |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6,600,000 | 7,800,000 | " | |
| 59B | 선택1 | 2대 | 거실/주방 + 침실1 | 3,600,000 | 4,300,000 | " | |
| | 선택2 | 4대 |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6,600,000 | 7,800,000 | " | |
| 101A | 선택1 | 3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5,700,000 | 6,600,000 | " | |
| | 선택2 | 5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8,400,000 | 9,900,000 | " | |
| 102A | 선택1 | 3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5,700,000 | 6,600,000 | " | |
| | 선택2 | 5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8,400,000 | 9,900,000 | " | |
| 107A | 선택1 | 3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5,700,000 | 6,600,000 | " | |
| | 선택2 | 5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8,400,000 | 9,900,000 | " | |
| 117A | 선택1 | 3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5,700,000 | 6,600,000 | " | |
| | 선택2 | 5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8,400,000 | 9,900,000 | " | |
| | 선택3 | 6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10,100,000 | 11,900,000 | | |
| 129A | 선택1 | 4대 | 거실 + 주방 + 침실2 + 알파룸1 | 7,600,000 | 8,900,000 | " | |
| | 선택2 | 7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1 + 알파룸2 | 11,900,000 | 13,900,000 | " | |
| 150A | 선택1 | 4대 | 거실 + 주방 + 침실2 + 침실3 | 7,600,000 | 8,900,000 | " | |
| | 선택2 | 7대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침실5 | 11,900,000 | 13,900,000 | " | |
| 155A | 선택1 | 4대 | 거실 + 주방 + 알파룸 + 침실1 | 7,600,000 | 8,900,000 | " | |
| | 선택2 | 7대 | 거실 + 주방 + 알파룸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11,900,000 | 13,900,000 | " | |
| | 선택2 | 8대 | 거실 + 주방 + 알파룸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침실5 | 13,500,000 | 15,600,000 | " | |

② 빌트인가전

(단위 : 원, V.A.T 포함)

| 옵션선택 | 타입 | 제조사 | 선택안 | 모델명 | 금액 | 비고 |
|---|---|---|---|---|---|---|
| 하이브리드 쿡탑 | 전 타입 | SK매직 | 하이라이트2구 + 가스1구 | GRA-BH301H | 590,000 | 택1 |
| | | | 인덕션2구 + 가스1구 | GRA-BI300H | 820,000 | |
| 전기오븐 | 전 타입 | SK매직 | 일반형 | EON-B450M | 450,000 | 택1 |
| | | | 고급형 | EON-B401SA | 650,000 | |
| | | 삼성전자 | dacor | DOC24M977SM | 3,200,000 | |
| 식기세척기 (8인용) | 51A,53A,59A,59B | SK매직 | - | DWA-2628B | 480,000 | 택1 |
| | | 삼성전자 | - | DW50T4065SS | 590,000 | |
| 식기세척기 (12인용) | 101A,102A,107A ,117A,129A,150A,155A | SK매직 | 일반형 | DWA-7505B | 620,000 | 택1 |
| | | | 고급형 | DWA-80U5B | 910,000 | |
| | | 삼성전자 | dacor | DW60M9995UM | 2,600,000 | |
| 김치냉장고 /콤비냉장고 | 전 타입 | 삼성전자 | 콤비냉장고 | RL2640Z(Y)BBEC | 700,000 | 택1 |
| | | LG전자 | 김치냉장고 | K221PR14BL1 | 1,200,000 | |
| 양문형냉장고 | 전 타입 | 삼성전자 | 기본형 | BRS665040SR | 5,600,000 | 택1 |

| | | | | | | |
|---|---|---|---|---|---|---|
| | | | 고급형 | BRS665140SR | 7,200,000 | |
| | | | dacor | DRF429920APB | 26,000,000 | |
| 행주도마살균기 | 전 타입 | 파세코 | - | PDD-150M | 100,000 | |
| 의류관리기 | 101A,102A,107A,150A | 삼성전자 | CLASSIC WHITE | DF60T8300WG | 1,200,000 | 클린존 옵션 선택시 택1 |
| | | | CRYSTAL MIRROR | DF60T8700CG | 1,480,000 | |

③ 기타 선택품목

(단위 : 원, V.A.T 포함)

(1) 주방키큰장 선택

| 구분 | 적용부위 | 타입 | 선택옵션 | | | |
|---|---|---|---|---|---|---|
| | | | 1안 (기본형) | 2안 (무상) | 옵션가 | 비고 |
| 주방 선택옵션 | 주방키큰장 | 전타입 | 김치냉장고 상부장 | 키큰수납장<br>(가전소물장, 키큰장) | - | |

2. 플러스옵션 선택품목 (모든 플러스옵션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가능)

(1) 평면 선택

| 구분 | 적용부위 | 타입 | 선택옵션 | | |
|---|---|---|---|---|---|
| | | | 1안 (기본형) | 2안 (유상) | 옵션가 |
| 침실 평면옵션 | 침실4 | 117A, 155A | 침실4 | 주방특화형<br>(아일랜드 가구, 팬트리 가구도어 및 시스템선반, 3연동 슬라이딩도어 / 대형 드레스룸) | 4,338,000 |
| 주방 평면옵션 | 주방 | 101A, 102A | 오픈형 주방<br>(아일랜드 가구) | 히든주방(3연동 슬라이딩도어, 주방장식장) | 3,455,000 |
| | | | | 히든주방 + 엔지니어드스톤 | 4,572,000 |

• 슬라이딩도어는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닙니다.

(2) 현관 중문 옵션

| 구분 | | 선택옵션 | | | |
|---|---|---|---|---|---|
| | | 1안 (기본형) | 2안 (유상) | 옵션가 | 비고 |
| 현관중문 | 전타입 | 미설치 | 현관중문 +<br>간접등박스 | 1,990,000 | 51A, 53A, 59AB, 101A, 150A |
| | | | | 2,070,000 | 102A, 117A, 129A, 155A |
| | | | | 1,390,000 | 107A |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닙니다.
• 현관중문은 타입별 형태가 상이합니다.

(3) 클린존 옵션

| 구분 | | 선택옵션 | | | | |
|---|---|---|---|---|---|---|
| | | 1안 (기본형) | 2안 (유상) | 옵션가 | | 비고 |
| 클린존 붙박이장 | 101A,102A,107A,150A | 미설치 | 클린존 붙박이장<br>+ 의류관리기 | 1,500,000 | CLASSIC WHITE<br>(가전색상, 옵션 참조) | 의류관리기 가전<br>필수선택시 옵션가능<br>(가전 택1 포함 가격임) |
| | | | | 1,780,000 | CRYSTAL MIRROR<br>(가전색상, 옵션 참조) | |

※ 클린존 옵션 선택시 현관창고 공간이 축소됩니다.

(4)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 구분 | | 선택옵션 | | | |
|---|---|---|---|---|---|
| | | 1안 (기본형) | 2안 (유상) | 옵션가 | 비고 |
|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51A | 벽 : 타일<br>상판 : 인조대리석 | 엔지니어드스톤 | 1,440,000 | |
| | 53A | | | 1,420,000 | |
| | 59A | | | 1,480,000 | |
| | 59B | | | 1,410,000 | |
| | 101A,102A | | | 1,540,000 | |
| | 107A | | | 1,560,000 | |
| | 117A,155A | | | 1,840,000 | |
| | 129A | | | 1,200,000 | |
| | 150A | | | 1,680,000 | |

• 재료의 물성에 따라 재료 간 이음매가 발생됩니다.

(5) 다용도실 붙박이장 옵션

| 구분 | | 선택옵션 | | | |
|---|---|---|---|---|---|
| | | 1안 (기본형) | 2안 (유상) | 옵션가 | 비고 |
| 다용도실 붙박이장 | 101A | 미설치 | 다용도실 붙박이장 | 835,000 | |
| | 102A | | | 890,000 | |
| | 107A | | | 575,000 | |
| | 117A | | | 593,000 | |
| | 129A | | | 446,000 | |
| | 150A | | | 625,000 | |
| | 155A | | | 593,000 | |

• 타입별로 붙박이장의 형태가 상이하므로, CG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침실2 붙박이장

| 구분 | | 선택옵션 | | | |
|---|---|---|---|---|---|
| | | 1안 (기본형) | 2안 (유상) | 옵션가 | 비고 |
| 침실2 붙박이장 | 53A | 미설치 | 침실 붙박이장 1개소 | 919,000 | |
| | 59A | | | 782,000 | |
| | 59B | | | 760,000 | |
| | 101A | | | 919,000 | |
| | 102A | | | 880,000 | |
| | 107A | | | 919,000 | |
| | 129A | | | 919,000 | |
| | 150A | | | 880,000 | |

(7) 침실3 붙박이장

| 구분 | | 선택옵션 | | | |
|---|---|---|---|---|---|
| | | 1안 (기본형) | 2안 (유상) | 옵션가 | 비고 |
| 침실3 붙박이장 | 102A | 미설치 | 침실 붙박이장 1개소 | 880,000 | |
| | 107A | | | 838,000 | |
| | 117A | | | 776,000 | |
| | 129A | | | 919,000 | |
| | 150A | | | 880,000 | |
| | 155A | | | 782,000 | |

(8) 침실 드레스룸 (침실2 OR 침실3)

| 구분 | | 선택옵션 | | | |
|---|---|---|---|---|---|
| | | 1안 (기본형) | 2안 (유상) | 옵션가 | 비고 |
| 침실 드레스룸 | 101A | 미설치 | 드레스룸 도어 + 시스템선반 | 838,000 | |
| | 117A | | | 826,000 | |
| | 155A | | | 877,000 | |

(9) 드레스룸 특화 옵션 (침실1)

| 구분 | | 선택옵션 | | | |
|---|---|---|---|---|---|
| | | 1안 (기본형) | 2안 (유상) | 옵션가 | 비고 |
| 드레스룸 특화옵션 | 101A,102A | 폴대형 시스템선반 | 드레스룸 특화형<br>(벽판넬 / 드레스룸 선반) | 1,222,000 | |
| | 107A | | | 861,000 | |
| | 117A (침실 선택시) | | | 1,313,000 | |
| | 155A (침실 선택시) | | | 1,926,000 | |
| | 117A,155A (주방특화형 선택시) | | | 3,511,000 | |
| | 129A | | | 1,186,000 | |
| | 150A | | | 1,121,000 | |

- 타입별로 드레스룸의 면적이 상이하므로, CG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7A, 155A 타입은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레이아웃이 상이하므로 CG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침실1 붙박이장 옵션 (침실1)

| 구분 | | 선택옵션 | | | |
|---|---|---|---|---|---|
| | | 1안 (기본형) | 2안 (유상) | 3안 (유상) | 옵션가 |
| 슬라이딩 붙박이장 옵션 | 51A | 미설치 | 슬라이딩 붙박이장<br>(옷장) | 슬라이딩 붙박이장<br>(옷장 + TV장) | 2,138,000 |
| | 53A | | | | 2,138,000 |
| | 59A | | | | 2,434,000 |
| | 59B | | | | 2,399,000 |
| | 101A/102A | | | | 3,573,000 |
| | 117A/155A | | | | 3,203,000 |
| | 129A | | | | 2,769,000 |
| | 150A | | | | 2,757,000 |

- 51,53,59A/B 타입은 2안 (옷장)만 선택가능합니다.

④ 유의사항

- 플러스옵션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플러스옵션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천장형 카세트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 및 침실1에 기본 설치되는 냉매배관 및 관련시설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지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고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용량은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며, 설치되는 실내기외에 추가로 실내기를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해당 플러스옵션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가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고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동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시스템에어컨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관련 일체의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여야 함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계약 전 위치를 확인 요망)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일부 실을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없음.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함.
- 시공상의 이유로 일정 공정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하이브리드쿡탑 1안 및 2안은 기본 제공품목인 가스쿡탑(3구)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그 차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 플러스옵션품목인 하이브리드 쿡탑 설치상의 문제(하부의 오븐과의 간섭문제) 등으로 실제 시공시 해당 부위의 주방가구 형태(오븐 설치 높이 및 디테일 등)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플러스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기 바람.
- 각 평형별 플러스옵션품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각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됨.
- 각종 옵션 선택에 따라, 해당 주택형에 설치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거실, 주방 바닥 타일 옵션 선택을 하지 않을 시, 기본 제공품목인 침실에 시공된 강마루와 동일한 강마루로 시공되며, 플러스옵션 금액은 타일 시공금액과 강마루 시공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그 차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선택을 하지 않을 시, 기본 제공품목인 타일(300*600)로 시공되며, 플러스옵션 금액은 엔지니어드스톤 시공금액과 타일 시공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그 차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선택을 하지 않을 시 기본 제공품목인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며, 플러스옵션 금액은 엔지니어드스톤 시공금액과 타일 시공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그 차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는 가전소물장으로 시공되어 있으나 견본주택타입을 포함하여 일부 타입은 가전소물장과 김치냉장고장 중 선택해야하며(무상), 선택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수납장의 형태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플러스옵션품목 선택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플러스옵션품목 선택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 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플러스옵션품목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플러스옵션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플러스옵션품목 계약은 자재 발주, 시공 개시 등 비용발생 이후부터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시공상의 일정 등으로 비용발생 시점을 통보하지 않음.
- 플러스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플러스옵션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표기 (침실1,2 등)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플러스옵션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① 납부계좌

| 항목 | 구분 | 금액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선택품목 공사비 | 계약금 | 10% | 국민은행 | 486801-01-430838 | (주)대우건설 |
| | 잔금 | 90% | | 개인별 가상계좌 | |

② 납부방법 및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선택품목 공사비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 약정일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고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등) 제출[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은 발코니확장 계약시에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계약서에 납부계좌, 납부금액, 납부일정 별도 안내)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람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상기의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 '1030702홍길동']
■ 납부약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함.(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착오납입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금액

①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적용품목 및 범위 (단위 : 원, V.A.T.포함)

|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은 기본 선택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
|---|---|---|
| 문 |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 발코니내부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디지털도어록 |
| 바닥 |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 벽 |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쉬트 및 벽패널류 등), (가변형벽체, 발코니, 실외기실 , 대피공간의 벽체도장),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선반포함), 받침장, 재료분리대(욕실포함) |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일괄소등스위치, 스마트스위치, 스위치, 콘센트,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
| 천장 |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
| 욕실 | 천장, 타일(바닥,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등), 샤워부스 ,욕실악세서리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포함), 욕실환풍기, , 전자비데 |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스위치, 콘센트 |
| 주방가구 |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및 자동식소화기, 가스쿡탑, 싱크절수기 | 소방관련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급수, 배수, 난방) |
| 조명가구 |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매입/복도등기구 제외) | 매입/복도등기구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 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② 마이너스 옵션금액 [ 단위 : 원 / V.A.T포함 ]

| 구분(주거전용면적) | 51A | 53A | 59A | 59B | 101A | 102A | 107A | 117A | 129A | 150A | 155A |
|---|---|---|---|---|---|---|---|---|---|---|---|
|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금액) | 17,416,000 | 19,194,000 | 19,255,000 | 19,345,000 | 32,954,000 | 33,137,000 | 34,925,000 | 37,257,000 | 41,607,000 | 47,580,000 | 49,088,000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③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 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 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 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 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및 별도계약 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하며, 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에는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되며,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수량/사양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안,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정 ₩15.000,000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만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됨.

## Ⅷ 기타 계약자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전에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05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 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음

■ 관련법령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시행으로 일일 공사기간 단축 시 단축기간 만큼 “갑”과 “병”의 공기연장이 될 수 있고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등) 및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 됨

■ 감리 회사 및 감리금액

[ 단위 : 원 / V.A.T포함 ]

| 구분 | 건축 | 소방/정보통신 | 전기 | 비고 |
|---|---|---|---|---|
| 회 사 명 | ㈜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추후 확정 | 태양기술단주식회사 | |
| 감리금액 | 2,229,141,200 | 추후 확정 | 376,846,210 |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 될 수 있음.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구분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의무 사항 이행 여부 | 고기밀창호 | 적용 |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한 성능 2등급 이상 적용 |
| | 고효율기자재 | 적용 | 변압기, 전동기, 펌프 고효율기자재 적용 |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거실,침실,주방 / 각 실 1개소 적용 |
|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세대내 일괄소등장치 적용 - 60㎡미만 미적용 / 세대내 1개소 |
| | 고효율조명기구 | 적용 |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기자재 및 동등 이상제품적용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공용 화장실 당 1개소 이상 |
|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 각 실 1개소 적용 |
| | 절수설비 | 적용 | 세대내 설치 수전 절수형 설비 적용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단위 : 원 ]

| 보증기간 | 보증금액 | 보증서번호 |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118,800,560,000원 | 제01212020-101-0002300호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내용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⑴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⑵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⑶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⑷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⑴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⑵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⑴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⑵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⑶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⑷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⑸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⑹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⑺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⑻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⑼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⑽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⑾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⑿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⒁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⒂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⒃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⒄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⑴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⑵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IX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합니다.]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합니다.]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합니다.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⑦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⑨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 신청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1호 가목 2]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주택공시가격” 이라 합니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적용합니다. (단, 청약가점제 시행전인 2007.9.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9.1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기타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사업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 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행자 및 시공자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주변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본 단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부 도로는 단지내 레벨계획으로 인한 단차이가 있어 일부 조경석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주변과 레벨차이로 인해 단차이가 발생하며 본공사 시 마감계획은 “조경석, 토목옹벽, 건축벽체”등으로 선택 시공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외벽은 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일부 개구부가 설치되며,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 (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배수구 및 환기 디퓨져 등의 설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 될 수 있음.
- 각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동 필로티의 높이는 동별로 상이하오니 견본주택 내 모형도를 확인하여야 함.
- 각 동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쓰레기집적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쓰레기집적소(관련법규 변경에 따라 규모가 증가될 수 있음)
- 각 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 내에 설치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등 단지조경 및 디자인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일부 설계변경 예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며, 관련내용에 대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102A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 제공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전시된 세대의 외부벽체 및 외부 바닥마감, 조경 및 시설물 등은 견본주택 전시용으로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 시 외벽은 해당 위치의 외벽마감(수성페인트 등), 바닥은 외부 조경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마감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플러스옵션 품목(유·무상),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전시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세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플러스옵션 품목(유·무상),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일부 세대는 플러스옵션 품목(유·무상), 미선택시 평면형태, 제공품목, 조명기기의 위치, 시스템선반 설치유무 및 길이, 주방가구의 형태 또는 길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플러스옵션 품목(유·무상), 선택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부에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마감재, 제공품목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타일류,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마루, 타일 등)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면형태 및 가구형태(일부 유상 또는 무상, 기준층 세대 등)에 대해서는 모형 또는 각종 홍보물 등의 CG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형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가구(색상, 마감, 형태 및 디자인) 및 마감재에 대한 내용은 상담석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에 생략 또는 표시(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조명기기(등기구) 사양 및 위치, 배선기구(스위치 및 콘센트)의 수량 및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욕실환기팬,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 마감재리스트 등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및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CG 등은 일부 내용이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차이(도어 및 창호의 위치, 열리는 방향, 도어의 종류(여닫이 또는 미서기 등), 크기 등의 변경을 포함함)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인허가 진행상황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외부조경 및 외부마감 포함) 또는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투시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계약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유효 동선 확보, 설비배관 공간 확보,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조경 바닥마감 색상 및 패턴은 본시공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변경)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의 미건립 평형의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악세서리 등)제품 등은 동일 평형대의 건립세대에 설치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되며 일부 타입은 평면 특성상 일부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악세서리 등)가 변경되어 설치되거나 미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은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공사 시 세대 내부에는 관련 법규에 맞추어 시공됨.
-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은 견본주택 오픈 전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각종 전시상품 및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대 내부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현관 방화문,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 등은 본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그릴창호 색상은 외관 색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내·외부 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주방가구, 침실 붙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기된 사항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입면계획, 색채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차도 및 보도), 공공청사, 학교, 근생시설, 의료시설, 보육시설, 종교시설, 지하철 역사 및 노선, 버스정류장 및 노선,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각종 인허가 과정 및 시행주체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전 분양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전 분양홍보자료,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견본주택내 사인물 및 모형 등에 표현된 계획도로, 공원, 녹지, 종교부지, 보육시설부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시설 등은 향후 정비계획 변경, 각종 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등의 인허가 결과, 현장 여건, 설계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세부계획(건물의 형태 및 배치, 출입구 및 통행로,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광역위치도(약도 및 지도 포함),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의 평면은 입면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므로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계획, 부대시설 등의 기타시설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
1.일반사항
・본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각 시설의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현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본 단지는 레벨차이가 큰 경사지에 계획된 관계로, 동별로 차량 및 보도 이동시 이동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동의 주변 레벨관계, 동출입구의 위치, 단지 내외부 이동동선 및 단지 주변의 대중교통과의 거리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단지,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의 이용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제기나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후 설계변경이 진행될 경우 및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인가도서 상의 내용과 견본주택에 전시된 사항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허가 진행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아파트), 각종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피트공간은 지반현황,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시행인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계약자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내·외간 레벨 차에 의해 일부 세대의 전면/후면/측면의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석축, 자연경사처리 구간의 설치여부, 단지내외 연결 보도 및 계단,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 및 선형이나 공법, 위치 등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심의 등 인허가 결과, 구조 및 디자인 의도 등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입주자의 선택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펌프실, 주차장 등)은 획지별로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 혹은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셋째자리 혹은 다섯째자리에서 절사방식으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돌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타사 또는 당사 타 현장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 주체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임.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확장시의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의 단위세대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 하더라도 면적에 차이가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정비구역 내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 및 녹지는 기부채납부지로 단지 내 도로 또는 공원 등이 아니므로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동선, 시설물, 경사도 및 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녹지, 종교시설, 보육시설 등은 현재 상황 또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아파트 시공사의 공사범위가 아님)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임.
- 구역외 도로설치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계획보다 지연 설치될 수 있으며, 구역내 계획된 공원, 녹지, 도로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은 향후 인허가 결과[정비계획변경 고시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함.
- 현재 계획된 주변 공원과 녹지 계획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은 향후 정비계획 상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의해 변경 가능함.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정비계획 상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 면적 변경 및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함.
-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및 경관조명, 측면 로고설치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등)은 입주자 부담임.
- 104동 및 109동은 임대세대와 일반분양세대가 공용부위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승인도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단지배치/조경
- 주/부출입구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과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부대복리시설 근방에 위치한 세대는 해당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 진동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101동, 104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106동 하부에 작은도서관, 독서실,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등이 위치하고, 105동 하부에는 휘트니스 및 골프연습장 등의 부대시설 위치하여 해당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 진동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101동, 104동, 109동 하부 주차출입구가 있어 이로 인한 눈부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108동은 정비계획 상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부지의 대지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2M 이내로 르엘대치(대치구마을2지구)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동의하여야함.
- 주차출입구 인접세대는 이로 인한 눈부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레벨차가 큰 대지 특성상 전면과 후면의 지면높이가 차이가 큰 동(세대)이 있으며, 향후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지면과 세대바닥 레벨간의 차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주변과의 레벨 차이가 있으므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옹벽, 석축 등의 설치에 의해 조망, 일조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명확히 인지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부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하여 단지 출입구에서 떨어진 동의 경우, 도보 및 차량 이동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에 불편한 동이 있으니,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에 면한 인접대지 레벨 및 지층성상 변동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의 종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에 인접한 동의 경우 주변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시공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높이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비계획 상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부지의 대지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동 위치 및 단지의 배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의 남서측 세영팔레스(대치975-20) 인접 4M도로(대치975-15도)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상 사업부지에 포함되나 이후 정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소공원 등으로 변경예정이며 이 경우 단지의 전면(동측) 근린광장과 동일 면적으로 교환되어 강남구청에 기부채납 될 수 있고 입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동의하여야함. .
- 상기 배치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 비치된 모형도, 도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공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및 단지 외부의 공원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옹벽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구조상 보강시설물에 따른 점용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동별, 세대별로 해당 시설물과의 거리는 차이가 있고 이용이 필요한 시설물의 사용에 불편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 시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실외 주민운동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 및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난간은 사용자 안전을 고려하고,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수직난간으로 설치 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단지 내 반영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이삿짐의 이동시 E/V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및 조경계획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조경, 세부 식재계획(위치, 규모, 수종 등) 및 조경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주, 배기탑 등 각종 시설물 또는 지상 구조물의 크기 또는 위치 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주 설치위치 및 설치개소, 형태, 높이, 폭,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각종 외부조명, 무선AP 및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녹지, 도로, 학교, 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빗물저류조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 등의 지상 돌출물이 각동 필로티 또는 지상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 카다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부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조경수 식재 위치, 마감재료, 형태, 색채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자전거보관소는 각동 필로티 및 단지 내부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새싹정류장 및 외부 휴게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수 있음

3.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푸른도서관(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시니어클럽(경로당) 등)의 세부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본 단지는 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지 내 건립되는 부대복리시설(생활지원센터,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북카페, 푸른도서관(작은도서관), 독서실, 실내놀이터, 어린이집, 시니어클럽(경로당) 등),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분양구분(조합원 · 일반 · 임대 등)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생활지원센터, 피트니스크럽, GX클럽, 골프클럽, 북카페, 푸른도서관(작은도서관), 독서실, 실내놀이터, 어린이집, 시니어클럽(경로당) 등 각종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은 천정고, 입면디자인, 벽체 위치 및 기둥설치 유무 등을 포함한 내부 레이아웃 및 디자인은 인허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부대시설은 105동, 106동 주동하부 및 데크층 등에 분산되어 설치될 예정으로,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근방 동은 소음 및 진동, 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어린이집과 놀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등)에는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으며, 골프클럽 내에 설치되는 스크린골프 시설의 경우, 스크린골프 시설만 설치되며 그 외의 집기류나 시설물은 제공되지 않음.
・주민공동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단지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은 101동, 104동 하부에 위치하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각종 부대시설(근생 포함)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동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냉방을 위한 실외기 시설이 근린생활시설 옥상 및 근방에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설치 상세 계획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용 소방펌프실 및 전기실은 및 주변 하부지하층에 별도로 설치됨.
・주민공동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추후 시설 이용시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 (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근린생활시설 (단지내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음.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위 사항들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통해서 계약 전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공간은 푸르지오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됩니다.

4.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및 층별로 층고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101, 104동 에 위치한 근린생활 시설 출입을 위한 차량이 주거 차량동선과 간섭될 수 있음.
・정비계획 상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부지의 대지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107-108동 인근 지하주차장이 지하주차장 각층별 2대 (총 4대) 감소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동의하여야함.
・경사지에 계획된 단지 특성상 일부 주동은 지하주차장의 특정 층과 지하 주동 출입구가 연결되지 않음
・공동주택 및 근생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면적 증감, 주차대수 변경 및 위치이동 등을 포함) 될 수 있음.
・주동별 근방에 주차 가능한 주차대수 및 세대당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차대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별도 구획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단지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동과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주차대수변경 및 위치이동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문주,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량 진출입구가 설치된 근방세대 는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 유효 높이 2.3m, 주차공간 전체 2.1m 이상으로 계획되었으며 위치마다 상이할 수 있음.

5.아파트주동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계단, 엘리베이터홀, 승강기용량, 탑승위치)등은 최종사업시행(변경)인가 도면의 내용에 준하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주동의 동출입구 및 저층부 외벽마감은 지정 석재(화강석) 및 특화자재마감으로 마감될 예정(계단실 등 코어 외벽, 필로티 내부 및 일부구간 제외될 수 있음)이며 석종,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 등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각 동별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이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필로티, 주민운동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이 위치하여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동배치상 생활폐기물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동 저층부는 석재마감 및 상부 몰딩설치에 따라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저층부 차별화마감 적용시, 별도마감 적용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일부 동 옥상에 계획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물은 현장여건 또는 각종 인증 등에 따라 설치 유무, 규모 및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동의 경우 필로티 캐노피가 외벽면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필로티 계획 및 벽 또는 기둥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현재  필로티 하부 설치를 검토중에 있는 무인택배시스템(동수에 비해 설치개소가 적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 예정임)은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경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각동별 필로티의 유무, 사이즈, 천정고 및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각동 필로티 내에는 각종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오수배관을 위한 PD공간이 필로티내 추가될 수 있음.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각 동 지하층에 제연실(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 됨.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지붕 및 옥탑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음.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이동통신용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동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조깅트랙,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입주 시 동별 위치 및 조경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람.
・동별,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좌우대칭 및 세대현관 출입구 방향이 상이)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단지 내 각종 공용시설(E/V,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시 각 동별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차이가 있어, 사용상의 여건(일부 동의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에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또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임.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창호의 크기 및 형태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하여 단지 출입구에서 떨어진 동의 경우, 이동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내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에 불편한 동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동의 경우 필로티 캐노피가 외벽면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필로티 계획 및 벽 또는 기둥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필로티 하부에 설치예정인 무인택배시스템과 단지 내 외부공간에 설치 예정인 쓰레기분리수거 보관시설은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경우 해충, 냄새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택배차량 및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각 동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됨)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 단지 내 단차부위 난간대의 사양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음.
- 108동은 정비계획 상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부지의 대지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2M 이내로 르엘대치(대치구마을2지구)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동의하여야 함.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동출입구 내부의 평면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기타층 엘리베이터홀과 계단실의 평면 및 창호형태는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용부의 창호(계단실, E/V홀 등)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될 예정임.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아파트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시 형태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상부도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입면의 색채는 모형 및 CG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단위세대

<공통>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음.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해야 함.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바닥에 층간소음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고, 선택 가능한 유무상옵션 항목에 차이가 있으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비확장형 선택 시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선택형 타입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타입으로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함.
- 선택형 타입의 경우 분양 후 일정시점이 지나면 본공사 일정을 감안하여 선택형 중 1개 타입으로 일괄 시공되며, 시공되는 타입은 그 시점에 선택현황 및 공사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
- 세대내 통합 분전반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의 경우 세대 통합 분전반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설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방가구의 내부 구성, 도어의 위치 및 개폐방향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음.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도면 및 견본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일부 타입의 경우, 욕실 뒷선반의 깊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음.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된 시설물에 입주 시 이를 임의 변경하여 발생한 하자에 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일반냉장고 설치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돌출될 수 있음.
・세대별 조건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 또는 대피공간이 설치됨.
・준공 시 주택법 관련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도로변 일부 세대에 방음벽 설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2의 경우 세탁기 위에 건조기를 올리거나,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등을 창호 앞쪽에 설치할 시 창호개폐가 어려울 수 있음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정고는  2.35m)이며, 실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내부에는 물건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실외기실 루버창의 경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관계 및 세대환기장치의 설치(환기덕트)로 인해 형태, 규격, 개폐방향,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내 통신단자함, 전기분전반 설치 위치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에 따라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상층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한 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측면 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한 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 벽체에 단열재가 부착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유효천장고, 유효실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세대 타입에 따라 환기 장비의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로 상이하게 설치되며, 장비 설치로 인해 세대별 천정 높이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129A 상부층, 150A 상부층, 155A 세대는 거실 또는 침실 상부에 천정 노출형 타입의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
・주택형별 일부 타입은 발코니의 일부가 전용면적에 산입되어 계산되었음.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음.
・주방과 인접한 발코니의 경우 창호 유무에 따라 환기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는 곳은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환기구가 설치 될 수 있음.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람.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 됨.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 시 피난 공간 (관련규정에 근거)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 (침실,욕실,PD 등의 부분)는 공사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로 변경 될 수 있음.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마감재>
・세대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견본주택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거실 우물천장은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 및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공사 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 될 수 있음.
・세대내 천정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향상을 위해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음.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천연석이 사용될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인조석의 경우, 재료의 접합 연결부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고,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포함)로 변경될 수 있음.
・층간소음완충재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침실(안방 포함) 가구는 침실 Size 및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치바람.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마루, 타일, 벽지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타일,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단, 일부 중국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타일 나누기 (현관,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부 창호 디자인(색상 포함), 프레임사이즈,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현장여건, 풍동실험 및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외벽 장식물로 인해 발코니 확장 시 침실과 거실의 조망/채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발코니 확장에 따라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 외부창호, 실외기실 그릴, 출입문 등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에 준함.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법령에 따라 적용됨.

<전기/설비>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 열원을 이용한 바닥난방 방식임.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 설치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전 평형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부스 바닥 및 욕조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붙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음.(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신발장 내부에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신발장 내부 사용면적이 감소하거나 가구내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음.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될 경우 해당 부위는 별도의 마감재로 설치될 수 있으며 매립배관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위하여 거실 또는 침실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각종 수전, 드레인, 선홈통, 보일러 등의 설치 위치, 규격 및 개수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음.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 방식이 적용되어 실외기실 또는 주방발코니 상부에 전열교환기가 노출형으로 설치되며 후렉시블호스 등 관련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견본주택에는 미설치되어 있음)이며, 전열교환기 등의 설치로 인해 일부 선반의 사용에 제약이 있거나 견본주택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고, 본 공사 시 전열교환기의 사양, 제조 및 설치업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되며,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109동 106동 지하층 기계실, 빗물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로 인하여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조망권 침해, 냄새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특히 발전기실에 인접한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일부 발코니에만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됨

・저층부 세대(1~3층)는 세탁기 설치 예정위치에 저층배관 통기를 위한 발코니 입상배관이 하나 이상 더 시공될 수 있음.
・실외기실 또는 주방발코니 내에 전열교환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와 각종 배관 설치 등으로 일부 타입의 경우 주방발코니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 수전위치, 바닥단차 부위는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가칭)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난방,환기,가스밸브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KT,LGU+,SKT)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oT 가전 연동은 이동통신사의 App을 통해 구현되므로,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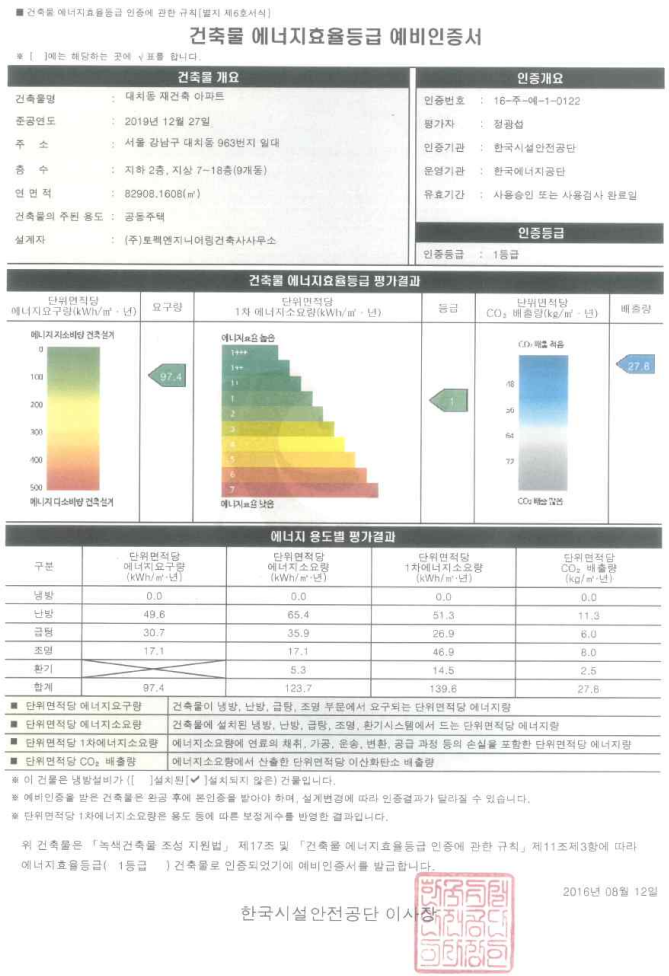
<발코니>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정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므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견본주택과 상이 하며, 일부 침실 및 발코니가 협소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상의 기본형 평면을 참고하시기 바람.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음.
・전후면 발코니 유무, 발코니 폭,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설치 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개소 및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시공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발코니 바닥턱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또는 유상옵션 선택 유무 등에 따라 설치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비확장형 선택 시 또는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관련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기타
• 본 “ 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투기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이후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추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2017년 1월 20일부터 체결하는 최초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토지법」 제9조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 구분 | 시행사 | 시공사 |
|---|---|---|
| 상호 | 대치3동 제1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대우건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1, 3층 1호 (대치동, 서림상가) | 서울특별시 종구 을지로 170 |
| 법인등록번호 | 114671-0030695 | 110111-2137895 |

■ 홈페이지 :http://www.prugiosummit.com/house/2020/daechisummit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대치동) 써밋갤러리 3층 대치 푸르지오 써밋
■ 문의전화 : 1800-4687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 내용 |  |  |